

## 요 약

금융위원회는 2022년 총 5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음. 이 중 보험 관련 특례가 인정된 서비스는 총 4건으로, TM 모집에 있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일명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한 것임. 최근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는바, 신속한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금융위원회는 2022년에 총 52건(서비스 종류로는 9가지)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보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사례는 총 4건(서비스 종류로는 1가지)임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 범위·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 관련 법령상의 규제에 대해 특례가 인정됨<sup>1)</sup>
  - 금융위원회는 2022년에 7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2건(서비스 종류로는 총 9가지)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음
    - 국내 및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있음(〈표 1〉 참조)
  - 이 중에서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가 인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4건(서비스 종류로는 1가지)임
    - 이하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 TM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현행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상,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TM)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의 전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하고, 청약내용·고지업무·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고 해당 녹음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 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됨
  -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청약이 완료될

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7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 TM 모집인이 가입 권유와 가입 의사 확인 과정 진행 후,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의 모바일 웹에서 비대면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중요사항 설명 및 청약절차를 진행하고 모집인의 안내·고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함
- 보험회사는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 내용을 제시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 설명을 제공하며 전자 음성 설명도 제공함
- 미러링 기술을 활용하여 모집인과 고객은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 모집인이 음성통화를 연결하여 직접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가입절차를 진행함
- 한편 위 특례 인정 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일정한 부가조건이 부과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보험상품은 설명 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은 제외하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보험료 10만 원 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함
  -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설명 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사항을 기록한 증거자료는 문서번호 및 계약자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표준상품설명대본상 답변·확인 사항마다 로그기록을 적시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험회사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위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증거자료를 점검하여 계약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함
  - 보험계약자가 설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설명 단락마다 충분한 설명 시간을 확보하는 화면을 구성하고, 보험계약자가 상품 설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금소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설명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연결되어 있는 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내용의 확인·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모집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모집인의 유선 설명을 원하는 경우 즉시 기존의 TM 가입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함

○ 최근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 규제 개선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모바일 웹을 활용한 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는 2021년에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음<sup>2)</sup>
- 2021년 및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축적된 테스트 결과 안전성과 편익이 검증되면 실제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2) 당시 신청인은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임(2021. 7. 21. 지정)

- 금융위원회에서도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이미지를 결합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 기존 TM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sup>3)</sup>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14일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위와 같은 규제 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표 1〉 2022년 혁신금융지정서비스 신규 지정 목록

| 번호    | 신청과제명 <sup>1)</sup> 및 서비스 주요 내용                                                                                           | 신청기업명                                                                                                                                                                                    | 지정일       | 관련 규제                                                                                            |
|-------|---------------------------------------------------------------------------------------------------------------------------|------------------------------------------------------------------------------------------------------------------------------------------------------------------------------------------|-----------|--------------------------------------------------------------------------------------------------|
| 1~25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br>-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22. 2. 16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제8호, 제165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제5항 |
| 26    |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br>-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 | 비씨카드                                                                                                                                                                                     | 22. 3. 30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
| 27~32 |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br>-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 상품을 포함하여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22. 9. 7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
| 33    |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br>-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하여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 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                                                                                                                                                                           | 22. 9. 7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2조 제4항, 제110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22조 제3항, 제123조 제1항, 제129조, 제373조                   |
| 34~38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br>-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                                          |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 22. 9. 7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2. 11. 21), 「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제8면

〈표 1〉 계속

| 번호    | 신청과제명 <sup>1)</sup> 및 서비스 주요 내용                                                                                                          | 신청기업명                                                | 지정일        | 관련 규제                                                                               |
|-------|------------------------------------------------------------------------------------------------------------------------------------------|------------------------------------------------------|------------|-------------------------------------------------------------------------------------|
| 39    |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br>-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                               |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 22. 9. 7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소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         |
| 40~47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b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 깃플,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 22. 11. 9  | 금소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제5항 제3호, 은행법 제28조 |
| 48    |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br>-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                            | 에이판다파트너스-신한투자증권                                      | 22. 12. 21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9조, 제373조                           |
| 49~52 |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br>- 기존 전화모집(TM) 과정보다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 |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 22. 12. 21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0항, 제4-36조의2 제4호, 제4-37조 제2호·제3호                |

주: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상의 서비스명을 따름